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배경훈 (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규제특례사업(실증특례, 임시허가)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(사망·부상)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해당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348호, 2026. 2. 19. 공포, 2026. 8. 2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(안 제41조의3)

- 1)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,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
- 2)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”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·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
- 3)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

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
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5. 11. ~ 6. 22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 3(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
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
(이하 이 조에서 “수급전용계좌”라 한다)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
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
전용계좌를 기재하고, 통장의 사본(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)을 첨
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
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”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
금융기관의 폐업·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.

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
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
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. 다만, 다른
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
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
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41조의3(손해배상금 수급전용 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 의 지정된 계좌(이하 이 조에서 “수급전용계좌”라 한다)로 받으 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 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 용계좌를 기재하고, 통장의 사 본(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 한다)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.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 로 이체할 수 없을 때”란 수급전 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 업·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 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. ③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

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
따른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이체
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
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
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
로 이체해야 한다. 다만, 다른
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
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
자 본인의 주민등록증(모바일
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 등 신
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
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
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2 - 4717